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36호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임실군의회 의장



1. 제정이유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있어 임실군에서 공모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공모사업 추진 및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제8조)
- 바.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기한: 2025년 7월 22일까지
-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

4. 제정안: 붙임

임실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사회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주관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수시로 파악하여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추진방향과 목표
2. 전년도 추진실적의 분석과 평가
3. 그 밖에 공모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 추진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적합성
2. 사업 필요성과 효과성
3. 주민 의견 및 관련 부서 협의
4. 재정 여건과 지원 방안

제7조(추진체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 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관련 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전문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③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는 사업 추진과정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공모사업 이력관리) 군수는 공모사업의 추진과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고, 군 누리집에 대상사업별로 공모사업 관리 이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1. 예산,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사업 관련 문서
2. 추진 부서 및 담당자 정보
3. 보도자료 등 홍보자료
4. 그 밖에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료

제9조(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 신청 전에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이 신청하며 군비 부담이 수반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해 신청하고 군비 부담이 있는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사업

② 군수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성과 평가 및 포상)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①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제26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계획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